

(앞쪽)

제 호

역학조사반원증

사 진

3.5cm×4.5cm

(최근 6개월 이내에
촬영한 여권용 사진)

성 명

농림축산검역본부

55mm×85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색상: 노란색)

(뒤쪽)

역학조사반원증

소 속:

직 급:

성 명:

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의6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
라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
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직인

-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-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